



질의 회신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교통시설 건설분야)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에서 정한 개발사업 중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중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협의 시기는 공사시행 전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정한 공사시행 전은 공사를 위한 제반 행정준비를 마친 실시설계 완료 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의 공사시행 전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를 할 경우 공사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축, 도로의 재 포장, 보수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제외되는데, 만약 도로의 선형개량(굴곡부)공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정도로의 도로공사를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신설·개축에 한하여 도로공사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도에서 시행하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04년 6월에 공사계약 체결 및 착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차로 수 확장이 요구되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 변경내용

- 당초 : 5.26km, 4차로, 변경 : 2.52km, 6차로
(※변경개발사업 대상 규모가 30% 미만임)

이러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

도로법 제23조가 정한 도로공사의 경우 신설 및 개축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선개념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해상교량 2.11km를 포함하여 총연장 3.44km(시점측 토공구간 0.81km, 종점측 토공구간 0.52km)의

왕복 2차로(폭 11.5m~13.8m) 도로사업인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육상구간의 도로 연장이 1.33km로 2km 미만에 해당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답 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써 도로법 제25조가 정한 도로공사의 경우(신설 및 개축에 한함) 공사시행 전에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 법 제23조의 규정에는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로공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로의 재포장이나 규모의 관계없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군수는 동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여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여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여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기초자료 단계에서 과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 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신설·개축(2km 이상)에 한하여 공사시행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은 사업

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아울러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은 도로의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위험지구, 하천황단 등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질 의

농어촌도로 공사기간이 3~4년간 장기화 되고 예산이 당해연도에 100% 확보가 어려워 총괄계약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일)계속 공사의 경우에도 매년 다음연도의 예산계상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있음. 상기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05. 8. 17) 개정 이전에 총괄 계약되어 사업이 착수된 동일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대상이 될 경우 앞으로도 매년 동일사업에 대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의 경우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 이전에 전체사업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로 전체사업구간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 거쳤다면, 매년 동일사업구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중복하여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질 의

골프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 골프장 시설계획과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며, 개설 후 일부를 군도로 기부채납 하고자 함.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방재정보광장

질의 회신

답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시·군에서 발주하는 군도, 시도, 지방도의 도로공사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지방도, 시·도, 군·도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에 해당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인접한 지역에 1.2km, 1.25km의 두개의 도로에 대한 사항임. 이중 1개소는 '07. 12월 법개정 이전에 도로계획결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개소는 현재 도로계획결정이 진행 중인 상태임. 즉 1개소는 법개정 이전에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개소는 법개정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임. 이권에 대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 시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1. 인근사업지역이므로 법개정과 관계없이 두개의 도로의 합이 2km이상이므로 두개의 도로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한다.
2. 법개정 이전에 행정단계가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현재 행정단계를 거치고 있는 2k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3. 두개의 도로가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도로가 행정단계 진행 중이고 각각의 도로이며, 2km미만이므로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답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써,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법 제24조가 정한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재해영향을 받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대해 문의 드림. 당초 실시설계(L=15.7km)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실시 이전인 2003년에 완료되었음. 그러나 2007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일부구간(6.0km)에 대하여 보완설계를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금회 일부구간 보완설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의 공사시행 전 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음.